



# 가공용 돼지고기 가격정산 실태 조사

축산물등급판정소 규격팀 대리 승 종 원

## 1. 목적

- 돼지고기의 약 60%가 육가공업체의 원료육으로 이용되고 있으며
- 이중 많은 육가공업체에서 구매 원료돈 대금정산은 생체중량 또는 도체의 등급에 따른 정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- 업체별 원료돈 대금정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등급별 대금정산을 유도함으로써 돼지고기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함.

## 2. 대상

- 시·도별 조사업체수 및 등급별 대금정산 적용 업체수

지 소	조사 업체수	등급별 정산업체수	지 소	조사 업체수	등급별 정산업체수
서울	13	2	전북	6	4
경기	25	8	부산경남	30	13
강원	17	4	대구경북	30	7
대전충남	30	5	제주	5	1
충북	19	4	계	191	56
광주전남	16	8			

## 3. 가격정산 방법

(제1유형)

[농협서울공판장 지육평균가격×등급별 적용율+특별장려금-공재

### ① 등급별 적용기준

평균가격	A등급	B	C	
2,400원 이하	+4.5%	+3.5	+2.5	-1.0
2,401~2,800	+3.5	+2.5	+1.5	-1.5
2,801~3,200	+3.0	+2.0	-1.5	-2.5
3,201~3,600	-2.5	+1.5	-2.0	-3.0

② 특별장려금 : A등급:7,000원/두, B등급:4,000원/두

③ 공제기준(탕박예 해당) : 규격 미달돈

□ 65~73kg 미만시 : 2kg마다 5,000원 공제

□ 96~104kg이상시 : 2kg마다 5,000원 공제

※ 탕박도체 지급기준 : 암:평균가의 91%, 거세:87%

- 박피도체의 경우 농협서울공판장의 지육평균가격에 등급을 적용하고, A, B등급에 대하여 특별장려금을 대금에 지급하는 유형
- 탕박도체의 경우 성별을 달리하여 (암:평균가의 91%, 거세:87%) 지급
- 대금정산을 위한 지급기준에 과소 과대한 도체중에 대하여 규격 미달돈으로 분류하여 공제

### [제2유형]

[농협서울공판장 당일 지육평균가격×생체중(kg)]×.등급별 식용율 + 성별적용율]

① 등급별 적용기준

□ A등급:70%, B등급:67%, C등급:63%, D등급:62%,

□ 위축돈 및 등외등급:58%, 비거세돈:55%

② 성별 적용기준

□ 암돼지 60% 이상 : 1% 상향 지급

□ 암돼지 40% 이상 : 0.5% 상향

□ 암돼지 30% 미만 : 0.5% 하향

□ 거세돈 95% 이상 : 0.5% 상향

□ 거세돈 90% 미만 : 0.5% 하향

- 박피도체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농협서울공판장 지육평균가격에 생체중, 출현등급별로 정산을 하되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함
- 이상의 2가지 유형은 농협서울공판장의 지육평균가격을 기초로하여 육가공업체에 따라 지육평균가격 산정기간이나 등급별 적용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였음.

### [제3유형]

[제주축협공판장 등급별·성별 지육평균가격×식용율(0.67)×도체총량(kg)×1.35(생체중 환산율)]+고급육생산 장려금

① 생체중 환산율 : 1.35(도체율 74% 적용)

② 고급육생산 장려금 : A(암):8,000원, B(암):A(거세):6,000원, B(거세):4,000원, 비거세(수):생체Kg당 500원 차감

※ 지자체(도)의 포상금(장려금)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

- 도축제경비중 도축세, 등급판정수수료는 농가가 부담하고 그외 경비는 육가공 업체에서 부담

- 제주축협공판장 등급별·성별 지육평균가격에 도체율 67%로 생체중 환산하여 적용  
- 육가공업체 자체 예산으로 고급육 생산 장려금 추가지급
- 생체중 환산율은 도체율 74%를 적용  
- 1.35(100/75)를 곱하고 등급과 성별에 따라 차등화한 육가공업체 장려금을 더하여 지급
- 제주축협공판장 등급별·성별 지육평균가격에 도체총량을 곱한 총 금액의 약 90.5%를 수취금액으로 받게 됨



**[제4유형]**

지육경락가격×생체중량(kg)×등급별 지육율 적용

① 지육경락가격 기준

[전일 농협서울공판장 지육평균가격+부산·경남지역 3개도매시장 박피도체 평균가격]/2

② 도체중별 생체중의 공제량(감량)

도체중	60kg미만	65kg이상~70kg미만	70kg	106kg	116kg	120kg	120kg이상
생체중 공제량	20kg	15kg	8kg	없음	10kg	20kg	30kg

③ 등급별 지육율 적용기준

- 66.5% : 지육율 75%미만
- 67.0% : 지육율 75%~76.9%
- 67.5% : 지육율 77%이상

- 적용율에서 등급적용 방법

A:4.5 B:4.0 C:3.5 D:3.0에 출현두수를 곱한 총합에서 총두수로 나누어 평점이 4.4이상이면 1%가산하고 3.5이하이면 1%를 감산하여 계산

- 농협서울공판장과 부산·경남지역 도매시장의 지육평균가격의 평균치를 이용하였고
- 규격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체중량대별로 생체중량을 차등공제
- 등급에 따른 지육율을 적용하여 품질과 육량에 따라 대금정산 지급
- 지육율 적용기준은 회원농가와와의 계약 사항으로 해당 농가가 그동안 출하된 돼지의 등급판정실적, 대금 결제 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.

**[제5유형]**

[지육가격×탕박중량(kg)×성별 적용율]+[보조금+고급육생산 장려금-공제]

① 지육경락가격 기준

[전일 농협서울공판장 지육평균가격+부산·경남지역 3개도매시장 지육평균가격]/2

② 성별 적용율 : 거세:90%, 암:87%

③ 보조금 : 계열화(회원)농가에서 출하된 돼지에 5,000원씩 지급

④ 고급육생산 장려금 : A등급 4,000원, B등급 3,000원씩 각각 지급

⑤ 공제 : 생체중 89kg이하와 130kg이상의 비거세돈에 대해 50,000원씩 공제

- 탕박도체의 대금정산시 활용하며 서울과 해당지역 도매시장 지육평균가격 적용
- 성별에 따라 적용율을 차등화한 후 계열화 여부, 등급, 생체중량을 고려하여 대금 정산

#### (제6유형)

[등급·성별 지육평균가격×탕박중량(kg)×성별 적용율]+[고급육생산 장려금-공제]

- ① 지육평균가격 : 농협서울공판장 비육돈의 등급·성별 지육평균가격
  - ② 성별 적용율 : 암:87%, 수:86%, 거세:89%
  - ③ 고급육생산 장려금
    - A등급 : 암:3,000원, 거세:7,000원
    - B등급 : 암:2,000원, 거세:3,000원
  - ④ 공제
    - 계류중 사돈 : 해당 농장의 당일 출하분 평균지육중량×(등급 암태지 평균가격×0.8)
    - 골절된 돼지 : 발생두수×10,000원
    - 기타 : 도축세, 검사수수료, 해체수수료, 등급판정수수료, 제비용
- 
- 농협서울공판장의 지육평균가격에 등급과 성별 적용
  - 성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거세 장려 및 정육생산량에 비중을 둠
  - 수송, 계류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중 일부를 정산 내용에 규정해 두고 있음

## 4. 조사결과

- 조사대상 191개 돼지 육가공업체중 56개업체(29.3%)에서 등급별 가격정산 하는 것으로 나타남
- '03년 2월 기준 191개 업체에서 등급판정한 569,366두중 등급별로 가격정산한 두수는 334,093두로 58.7%이었고, 등급을 적용하지 않은 두수는 41.3%두로 나타남
  - 업체수에서는 등급별로 가격 정산하는 비율이 낮았지만 두수에서는 등급 적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그 이유는 대규모 육가공 업체에서 등급을 활용한 대금정산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.
- 업체의 규모별 대금정산 방법
  - 대형 육가공업체는 원료돈을 등급별로 적용
  - 중소 육가공업체는 대금정산시 등급과 생체중 지급율을 혼용해서 적용
  - 소규모 육가공업체는 생체중 기준 지급요율 적용
- ※ 등급별 가격적용 기준 : 농협서울공판장 및 부산·경남 3개도매시장의 평균단가 등

## 5. 활용방안

- 축산물등급관청소 돼지 등급별 가격정산 모델 개발 및 홍보
  - 등급판정 결과와 육가공업체 가공 규격에 차이 발생
  - 가공업체에서는 유통거래 형태에 알맞은 원료돈 구매
  - 도체중대와 등지방두께에 따른 다양한 정산적용 모델 개발
- 등급별 가격정산과 단순 가격정산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여 보도자료로 활용 및 등급별 가격정산 유도
- 시·군 작목반 지도교육 전달반 운영과 연계하여 가격정산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
- 육가공업체의 등급별 가격정산 유도